

#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07-제25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03. 30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(안 제11조)

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사업 비 전액을 예산에 배정할 수 있음.

나. 예산참여지역회의(안 제12조 및 제14조)

- 임 기 : 2년(연임 가능)

- 기 능 : 주민 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,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등

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안 제15조 및 제17조)

- 임 기 : 2년(연임가능)

- 기 능 :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,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능 수행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(제113회 - 총무위 부록)

## 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참조

2) 입법예고(2007. 2. 23 ~ 3. 17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2. 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

제3조(법령준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시장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시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

(제113회 - 총무위 부록)

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8조(의견 제출) ①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

제9조(결과 공개)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예산학교) ①시장은 매년 지역회의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·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,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제11조(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) ①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70%이상 동의를 얻은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예산에 배정할 수 있다.

②주민동의 사업의 우선투자를 위해서는 읍·면·동별 지역회의에서 의견수렴후 동의서가 시장에게 제출된 사업으로 한다.

## 제 2 장 예산참여지역회의

제12조(지역회의의 구성 및 임무) ①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별로 예산참여지역회의(이하 “지역회의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지역회의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~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해당 읍·면·동장이 되고,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,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위원은 읍·면·동개발자문위원, 통·리장, 주민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읍·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⑤지역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읍·면·동의 총

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회의) ① 지역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하며, 임시회는 해당 읍·면·동의 예산편성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4조(기능)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
2.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
3.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

### 제 3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위원회의 명칭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, 시민단체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제113회 - 총무위 부록)

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예산편성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
2.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수렴
3. 투자사업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
4. 기타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

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【지방재정법】

제39조(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【지방재정법시행령】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3. 사업공모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
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